

경운대학교 항공보안교육연구원운영규정

제1조(명칭) 본 연구원은 경운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항공보안교육연구원(이하 '교육연구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교육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교육연구원은 우리 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사업) 교육연구원은 우리 대학교의 특성화와 항공보안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항공보안 분야 혁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연구사업을 진행한다.

1. 항공보안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사업
2. 항공보안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
3.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 기타 기관 대상 교육사업
4. 항공보안 교육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사업
5. 미래 항공보안 역량교육을 실현하는 교육정책 연구·개발
6. 항공보안분야 혁신을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과제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조직과 업무) ① 교육연구원에 연구원장을 두고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원장은 항공보안교육연구원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③ 교육연구원의 사업 및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항공보안 교육 및 연구,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부, 센터 등의 산하기관을 둘 수 있다.

④ 각 산하기관장은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제6조(연구원 등) ① 교육연구원에 겸무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교수요원(교관), 보조연구원, 자문위원,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연구원은 총장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원장이 선임한다.

③ 교수요원(교관)과 직원의 채용은 '우리 대학교 직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및 절차'를 따른다.

④ 보조연구원은 연구책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⑤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타교 교원 또는 본 교육연구원 사업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⑥ 교육연구원의 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연구원에 직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교육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산하기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우리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선임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연구원 운영의 기본 계획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제정 및 개폐
4. 산하기관과 하부 조직의 설치 및 폐지
5. 기타 교육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8조(재정) 교육연구원의 재정은 교육비, 교비, 기부금 및 보조금, 연구사업의 수익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9조(강사료 등)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교육사업에서의 강사료 지급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시간 당 강사료는 관련법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타 전문교육기관의 강사료를 반영하여 운영회의를 거쳐 연구원장이 책정하되 대학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강사료의 지급 규모는 관련법과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제10조(교육비) ① 교육비는 관련법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타 전문교육기관의 교육비를 고려하여 연구원장이 책정하되 대학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원장은 운영회의를 거쳐 필요로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비를 할인할 수 있다.

제11조(회계) 교육연구원의 회계는 우리 대학교 예산회계규정에 준한다.

제12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22조(운영세칙) 그 밖에 교육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19.09.0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